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4나21230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## 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4나212305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가소16381 판결

## 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 2024. 9. 12.

판결 선고 2024. 11. 21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. 5. 29. 선고 2023가소16381 판결

## 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일수

판사설승원

판사윤지숙